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3가단2600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원경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11. 9.

판 결 선 고 2023. 12. 7.

주 문

1.가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2022. 4. 10. 체결된 별지2 기재 매매계약을 19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2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2022. 4. 10. 체결된 별지2 기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

2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3. 일부 기각 부분

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,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.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,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.

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250,000,000원이고,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279,923,778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체에 대한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250,000,000원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나, 갑 제2호증, 갑 제3호증의 3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한 매매대금 250,000,000원에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40,000,000원과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등 채무 20,000,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도한 영업의 가액 내지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매매대금 250,000,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 60,000,000원이 공제된 190,000,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, 따라서 사해행위 관련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의

액수는 190,000,000원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(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).

판사 이영풍

별지